

서울특별시마포구
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2008. 4. 14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. 4. 3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. 4. 4
- 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. 4.14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탁정웅 청소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, 오수·분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「하수도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어,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마포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2) 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 정비
 -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「하수도 법」으로 변경

- “오수처리시설 등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변경
- “분뇨 및 관련영업 및 정화조청소업”을 “분뇨수집·운반업”으로 변경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, “오수·분뇨처리에 관한 내용”이 「하수도법」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, 조례의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각 조문 및 서식 중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각각 「하수도법」으로, “오수처리시설 등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하며, “분뇨 등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”는 상위법에서 관련업종이 통폐합됨에 따라 “분뇨수집·운반업자”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음.

0 동 조례안 중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, 안 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오수처리시설 들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개정함에 있어 “오수처리시설”을 “개인하수처리시설”로 개정한다고 하여 “등”이 누락되어 있는 바, 현행 규정에 있는 “등”을 삭제하여야 하고,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중 “「하수도법 제41조제3항」은 “「하수도법 제41조제3항」으로 하며, 별지 제6호 서

식 및 제7호 서식 중 과태료 처분내역란의 “부과기간”은 각각
“부과기관”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